

지구과학교육과 학사과정 운영 규정

재정 2018. 05. 21.
개정 2018. 10. 17.
재개정 2022. 02. 28.

제1장 총괄

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며, 지구과학 및 지구과학 교육 분야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미진한 점이 없게 함을 주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교과과정

제1조 (영어진행강좌)

- ①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학사과정 재학생은 3학점 이상의 전공교과목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의 영어진행강좌를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(개정 2022.02.00).
- ② 국내·외 타대학에서 영어진행강좌를 수강하고 해당 과목에 대하여 교류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 위 9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.

제2조 (이수과목)

학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과목은 본교 교과과정에 따른다.

제3조 (평점)

총 이수과목에 대한 평점 평균, 전공 평균은 모두 2.0 이상이어야 하며,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직과목의 평균은 2.4 이상이어야 한다(개정 2022.02.00).

제4조 (전공선택과목) (개정 2022.02.00)

- ① 환경지구과학은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나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, ②의 전공선택과목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.
- ② 지구과학교육과에서 개설된 전공선택과목 이외에 아래 1~3호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지구과학교육과의 전공선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. 단, 지구과학교육과 개설과목이 아닌 과목만으로 전공선택과목을 이수하려고 하는 경우, 붙임의 전선인정과목목록 중 2계열 이상에서 각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 1. 사범대학 과학교육계열, 수학교육과, 자연과학대학, 공과대학에서 개설한 과목 중 지구과학교육과 전선인정과목목록에 속하는 과목
 2. 3학년 이상의 학생이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득한 후 이수한 본과 및 타과의 대학원 과목
 3. 국내 및 해외 교환학생 등을 통해 이수한 타 대학 교과목 중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득한 과목
- ③ 복수전공 이수에 한하여 교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

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. 단, 과학교육계열 이외의 사범대학 학과와는 중복하여 전공 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다.

1. 복수전공 학과(부)와 지구과학교육과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과목(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): 최대 9학점
2. 복수전공 학과(부)와 지구과학교육과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(부) 교과목(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): 최대 3학점
- ④ 복수전공 이외의 다전공에 대해서는 전공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졸업 논문)

- ① 지구과학교육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.
- ② (지도교수) 졸업 논문은 학과 정교수 중 1명 이상의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, 지도 교수의 선정 신청은 논문 발표 최소 9개월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- ③ (논문발표) 졸업 논문의 발표는 연 2회(6월, 12월) 진행하며, 발표 방법은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④ (논문제출) 졸업 논문을 발표한 자는 졸업 최소 1개월 전까지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학교 현장 실습)

사범대학 부설학교 또는 자율선택기관에서 사범대에 기준에 따라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하여야 하며, 학교현장실습 신청을 하기 전 아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- ① 지구과학교육과 2, 3학년 대상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

대상	과목명
2학년	721.221 고체지구물리학및실험 1 721.222 고체지구물리학및실험 2
	721.263 고체지구과학및실험 1 721.264 고체지구과학및실험 2
	721.266 천체지구과학및실험 1 721.267 천체지구과학및실험 2
	721.311 대기지구과학및실험 1 721.312 대기지구과학및실험 2
3학년	721.321 해양지구과학및실험 1 721.322 해양지구과학및실험 2
	721.471 지구과학교육론 721.474A 지구과학학습지도 및 교재연구

- ② 학교현장실습 실시 이전 총 98학점 이상을 이수

단, 총 이수학점이 95~97학점인 경우에는 학과에서의 심의를 거쳐 학교현장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.

제2장 기타

재학 중 교직인적성검사 2회, 응급처치교육 2회를 이수해야 하며, 입학년도에 따라 성인지교육 2~4회를 이수하여야 하며, 각 교육은 1년에 1회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부 칙(2018.10.17.)

이 규정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2.02.28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